#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희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674

발의연월일: 2022. 7. 27.

발 의 자:김희곤·구자근·김영식

김예지 • 박성민 • 박대수

백종헌 • 윤재옥 • 이명수

전봉민 · 정희용 의원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은행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,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 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기업 등 법인과 달리 일반 개인들 은 승진 등으로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 등이 아닌 한 일일이 자신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금리인하 요구에 제한적임.

또한, 신용상태 개선 여부에 대한 추정만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하였다가 은행이 금리인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실정임.

이처럼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 금융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충분한 제도 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은행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,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

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금리인하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(안 제30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 구를 할 수 있음을 신용상태가 개선된 내용과 함께 알려야 한다.
- ④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후에는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를 그 사유와 함께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알려야 한다.

제69조제4항 중 "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"를 "제3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알리지"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의2(금리인하 요구) ①・②	제30조의2(금리인하 요구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③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
	결한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
	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
	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
	게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음
	을 신용상태가 개선된 내용과
	함께 알려야 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④ 은행은 제1항에 따른 금리
	인하 요구를 받은 후에는 해당
	요구의 수용 여부를 그 사유와
	함께 금리인하 요구자에게 알
	려야 한다.
③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제69조(과태료) ① ~ ③ (생	제69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
략)	같음)
④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	④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4항
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아니	까지를 위반하여 금리인하요구
한 은행에는 2천만원 이하의	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금리
과태료를 부과한다.	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
	<u>알리지</u>

⑤・⑥ (생 략)

⑤·⑥ (현행과 같음)